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000 발의연월일: 2022. 10. 31.

발 의 자:주철현·권인숙·김두관

김수흥 · 김승남 · 김홍걸

민형배 · 송기헌 · 안호영

윤재갑ㆍ허 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임대수탁 제도는 수탁 요건에 보유기간기준이 없어 농업경영 의사가 없는 자도 농지 취득 직후에 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하면 「헌법」과 「농지법」에 따른 자경 및 농업경영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해당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어 농지 투기 등에 악용되고 있음

이에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사업등이 농지 투기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한해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농지 취득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처분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 거부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소유한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 법인 임원 등에게 농지를 처분하여 처분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특수관계가 아닌 자에게 농지를 처분하도록 처분대상을 규정하도록 함(제10조제1항).
- 나.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제도 등이 농지 투기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한해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가 가능하도록 함(제23조).
- 다. 농지 처분명령 미이행자 뿐만 아니라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도 매년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63조제4항).
- 라.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를 거부, 기피,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64조제2항).

법률 제 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업경영계획서"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농업경영계획서"를 각각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를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내용"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중 "소유하고 있는"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농지"를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한다.

5의2.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제54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농지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농지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게 해당"을 "자에게 해당 농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최초로 처분명령을 한"을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으로, "처분명령이"를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따라 처분명령"을 "따른 처분명령 또는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으로, "처분명령을 이행하면"을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면"으로 한다.

제64조제2항 중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2.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기피,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

고한 자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1항에 따라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제4조(원상회복명령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63 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한 경우 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	2
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	
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	
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발	
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	
6조제2항제2호・제7호・제9호	
・제9호의2 또는 제10호바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u>농</u>	<u>농</u>
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	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
<u>하고</u>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영농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
	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
	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구・읍・면의 장은 제1	4
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제2항 단서에 따라 <u>농업경영계획서</u>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 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4일, 제3항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한다.

⑤ ~ ⑦ (생 략)

- 제8조의2(농업경영계획서 등의 보존기간) ① 시·구·읍·면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출되는 <u>농업경영계획서</u>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② <u>농업경영계획서 외</u>의 농지취 득자격증명 신청서류의 보존기 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농지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소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	8조의2(농업경영계획서 등의 보
	존기간) ①
	<u>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u>
	· 체험영농계획서
	·.
	② <u>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u>
	체험영농계획서 외
제	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
	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

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처분하여야 한다.

- 1. ~ 6. (생략)
- 7.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 한 사유 없이 제8조제2항에 따른 <u>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u>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② (생략)
-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 지대차)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할 수 없다.
 - 1. ~ 4. (생 략)
 - 5. 제6조제1항에 따라 <u>소유하고</u> <u>있는</u> 농지를 주말·체험영농 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 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

<u>농림축산식</u>
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1. ~ 6. (현행과 같음)
7
<u>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u>
•체험영농계획서 내용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
대차) ①
<u>.</u>
1. ~ 4. (현행과 같음)
5 개인이 소
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신 설>

6.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 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 는 경우

7. ~ 9. (생 략)

② (생략)

사) ① (생략)

<신 설>

-	_	_	_	_	_	_	_	_	_	_	_	_	-	_	-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5의2.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업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 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 게 하는 경우

6.									
_					<u>농</u>	기	중	3년	(٥
<u> </u>) :	_유	한	농	고]-				
_									
_									

- 7. ~ 9.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 사) ① (현행과 같음)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 항에 따라 농지의 소유・거래・ 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 을 확인하기 위하여 농지 소유 자,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 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

② ~ ⑦ (생 략)

제63조(이행강제금) ① 시장(구를 | 저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 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감정평가법 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 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_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 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 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 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 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한다.

- 1. 2. (생략)
- ②・③ (생략)
-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

<u>Un une moet on r</u>
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
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underline{3} \sim \underline{8}$ (현행 제 2 항부터 제 7
항까지와 같음)
제63조(이행강제금) ①
<u>자에게 해</u>
당 농지의
1.•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u> </u>

겨이 지수으 Q처바으 노지 소

<u>초로 처분명</u>령을 한 날을 기준 | 분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 이 으로 하여 그 처분명령이 이행 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이행강 제금을 매년 1회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 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처분 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 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하다.

⑥ ~ ⑧ (생 략)

제64조(과태료) ① (생 략)

②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신 설>

③ (생략)

한 경영 또는 현경외국 경영 이
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처분명령 또는 원
<u> 상회복 명령이</u>
<u>.</u>
⑤
따른 처분
명령 또는 제42조에 따른 원상
회복 명령 처분명령 또
는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면 -
<u>.</u>

⑥ ~ ⑧ (현행과 같음)

| 제6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해당하는 -----
 - 1.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 지 아니한 자
 - 2.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기피, 방해하거나 거짓 으로 보고한 자
 - ③ (현행과 같음)